



한 · ASEAN FTA

FTA 100% 활용 가이드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http://www.customs.go.kr>



한 · ASEAN FTA

FTA 100% 활용 가이드

CONTENTS

I. FTA 특혜관세 품목이 확대되었어요!.....	4
■ 태국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싱가포르 FTA와 한·ASEAN FTA는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 ASEAN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II. 원산지증명서(C/O)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9
■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한국산 아닌가요?	
■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보내서 말레이시아에서 최종제품을 만든 후 한국으로 수입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캄보디아산 물품이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나요?	
■ 제3국에서 송품장(invoice)을 받은 경우에도 특혜관세가 적용 되나요?	
■ 라오스는 ASEAN 국가이면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양허 대상국가로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아무 원산지증명서나 가능하지 않나요?	
■ 원산지증명서가 조금 다른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나요?	
■ 공장등록제를 하면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III. 한·ASEAN FTA 활용하세요!	21
■ 관세청의 FTA 고객센터 방안을 활용하세요!	
■ FTA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신청하세요!	
■ FTA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관세청 「관세청 FTA포털」 이용하세요!	
IV.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24
V. Q & A (질의응답)	27
VI. 알아두면 좋은 자료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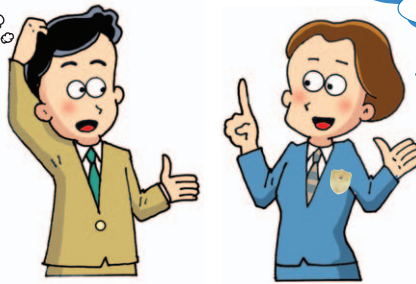


I .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어요!

태국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태국에 수출입되는 물품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태국은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는 '06.8.24일 타결되었고 국내 이행 절차를 거쳐 올해 6.1일부터 발효됩니다. ASEAN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 연합입니다.
- 그러나, 태국은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올해 6월부터 발효되는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각 국가별로 국내이행 절차에 차이가 있어 6.1일자로 발효가 확정된 국가는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6개국이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4개국은 국내 이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점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ASEAN FTA 발효 국가 현황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오니 특혜관세 적용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상황〉



한·싱가포르 FTA와 한·ASEAN FTA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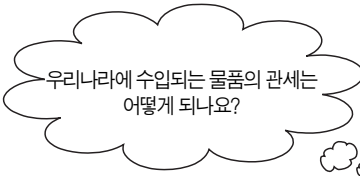


-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와 한·ASEAN FTA는 별개의 조약으로 각각의 조약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
- 한·싱가포르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상품에 대해서는 한·ASEAN FTA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합니다.
- 따라서, 수출입업자가 선택하여 보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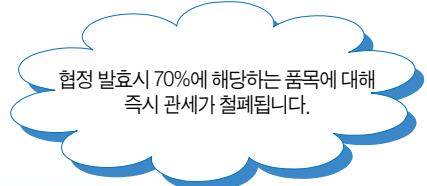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협정 발효시 7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 한-ASEAN FTA는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을 정한 후 모든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또는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에 배치하고 기간에 맞춰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합니다.
-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수입액 및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모든 관세를 완전 철폐하며, 이중 70%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일반민감품목은 2016년까지 관세가 0~5%로 감축됩니다.
-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관세율 할당(TRQ) 등 5개 방식이 적용됩니다. TRQ 품목인 새우(냉동·신선), 냉동갑오징어, 강남콩, 매니옥은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ASEAN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 ASEAN 5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관세철폐 방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며, 일반품목군의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07년까지 0~5%로 인하하고,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합니다.
- 신규 회원국인 베트남은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철폐 방식에 맞춰 2018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까지 철폐합니다.
- 일반민감품목은 국가에 따라 2016년에서 2024년까지 관세가 0~5%로 감축되며, 초민감품목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양허제외, 관세율 할당(TRQ) 등 5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 한·ASEAN FTA에서도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성공단 생산물품 중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당해 제품의 가격중 비원산지재료비가 40%이하 이고, 동시에 당해 제품의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비가 60%이상 이어야 합니다.
- 대상품목은 ASEAN 국가별로 각각 100개(HS 6단위)로서, 의류, 시계, 신발, 편물 의류, 전기기기, TV 및 VTR 등 개성공단에서 생산가능한 주요 품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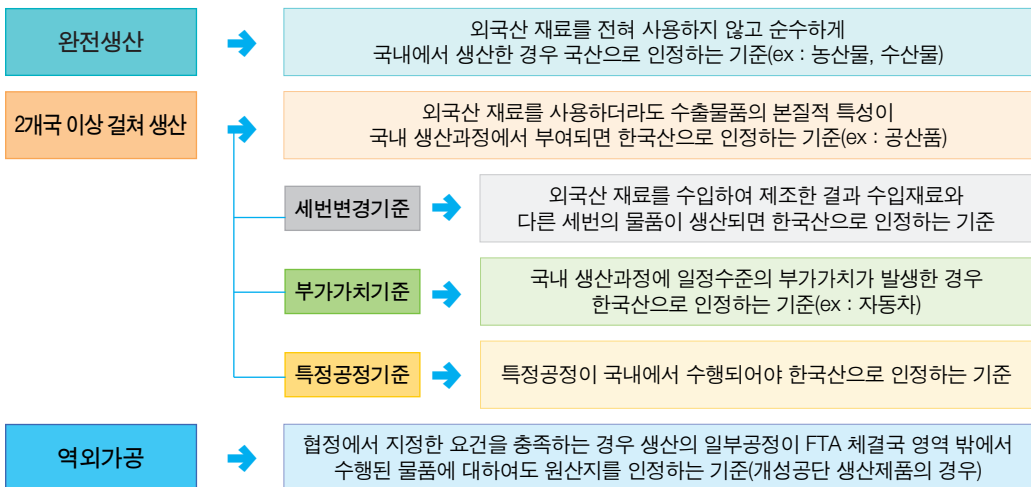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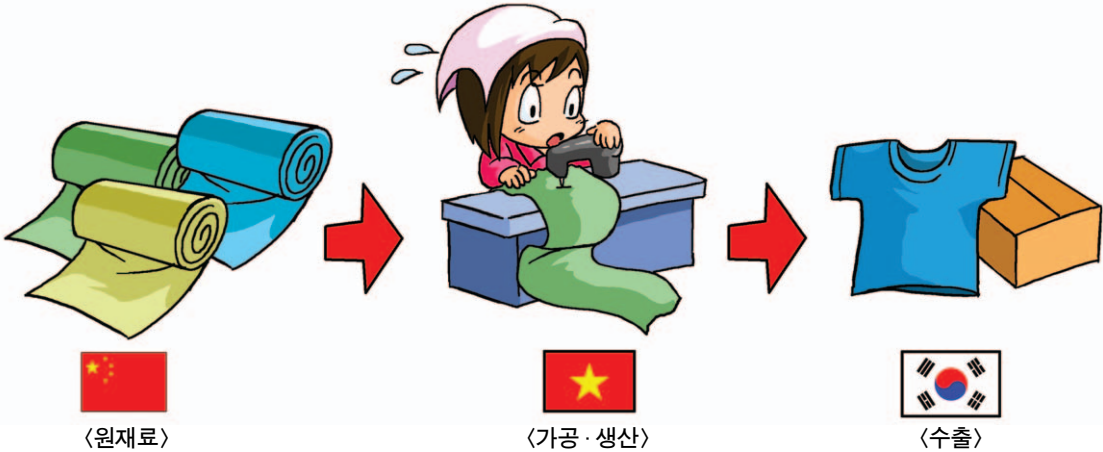
II. 원산지증명서(C/O)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한국產 아닌가요?



- 한국產 물품이란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가공, 조립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3]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완전 생산 물품,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 역외가공 물품 등을 원산지(한국產)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는 세번변경, 부가가치 및 특정공정 기준 충족물품이 있는데, 이중 두가지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산 원재료를 단순 조립·생산하여 상품의 라벨에 'Made in Korea' 라고 표시 한다고 해도 한·ASEAN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혜관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옷을 만드는 경우**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한·ASEAN 협정문 부속서2의 부록3(Appendix 2 to Annex 3 (PSR Text))에 따르면 여성용블라우스(HS6106)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 1) 다른 류(chapter)에서 6106으로 변경되고, 재단·봉제를 한 물품, 또는 2) 부가가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옷감은 면의 경우 52류에 해당하므로 중국산 면직물로 옷을 만드는 경우 류변경 기준은 충족이 되고, 베트남에서 재단·봉제 공정이 이루어 지면 베트남産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FOB 가격)에서 베트남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베트남산 원재료 포함)가 40%이상이면 베트남産으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부가가치 계산 방법(선택하여 사용 가능)

가. 집적법

$$\text{부가가치 (RVC)} = \frac{\text{VOM}}{\text{FOB}} \times 100\%$$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

나. 공제법

$$\text{부가가치 (RVC)} = \frac{\text{FOB} - \text{VNM}}{\text{FOB}}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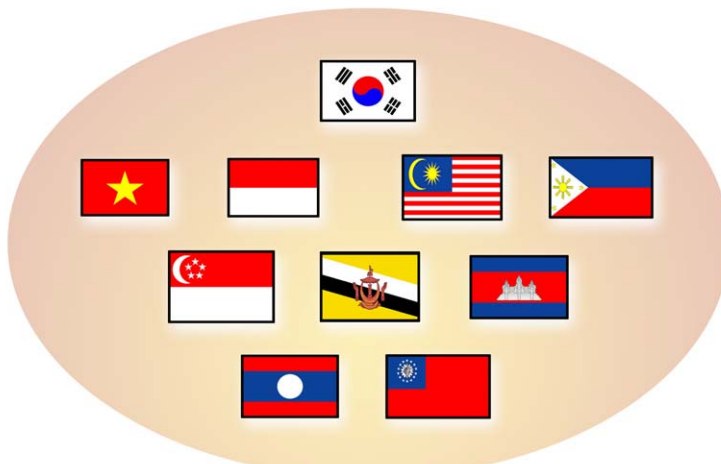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ASEAN 국가에서 사용된 한국산 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 되나요?



- 한·ASEAN FTA 협정 및 FTA 관세특례법령에 따라 우리나라 원재료와 ASEAN 국가의 원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 계산시 한국 및 ASEAN 국가산 물품은 모두 원산지 재료로 계산이 가능하며,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수출품을 만드는 국가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공정을 거쳐야 원산지 재료로 인정이 됩니다.
- ※ 불인정 공정이란, 냉동·냉장·수송을 위한 공정 등 단순히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 포장의 변경, 단순한 분쇄·절단, 혼합 등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하는 공정으로 보기 어려운 공정을 의미



〈역내국가끼리의 원재료는 동일한 원산지 재료로 인정〉



캄보디아産 물품이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 직접운송되는 경우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혹은 운송상의 이유일 것
- ②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내수통관) 아니하였을 것
- ③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내수통관된 물품은 캄보디아産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ASEAN 국가내에서 내수통관 되었다면 해당 국가의 발급기관에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A라는 회사가 특정한 선박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반드시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라면, 단순환적의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내수통관 - 재수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해 인정



제3국에서 송품장을 받은 경우에도 특혜관세가 인정 되나요?



- 한 · ASEAN FTA 등 FTA 협정에서는 송품장 발행인과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FTA에서는 역내교역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거래 관행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입니다.(한 · ASEAN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1 (통관절차) 제7조 참고)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받고, 원산지증명서상에 제3국 송품장란에 표시를 하면(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참고), 제3국(예 : 홍콩)에서 송품장이 발행되었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앞의 직접운송요건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증명서 양식이 달라도 되지 않아요?



-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작성·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은 협정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각각의 협정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그 개수 및 기재항목별 증명서상 위치 등이 협정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 따라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협정의 명칭만으로 어떤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협정에서 적용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조금 다른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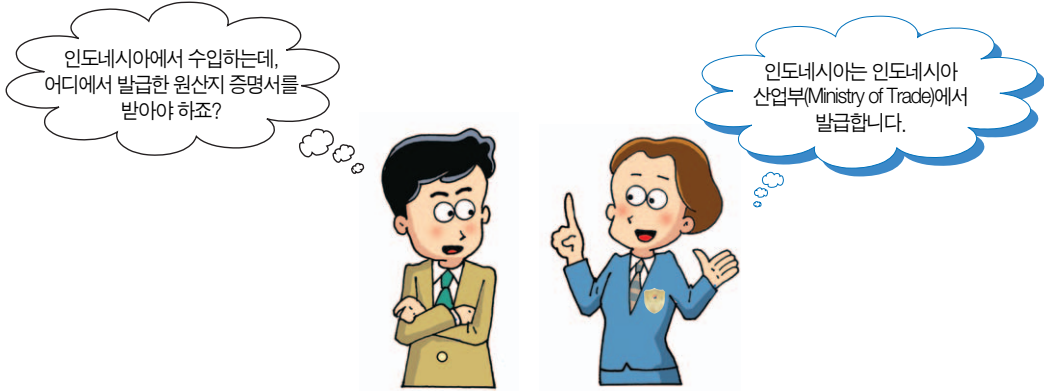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수출자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관련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또한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은 서로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발급주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한·ASEAN FTA가 아닌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APTA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한·ASEAN FTA 협정관계 적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각 FTA 협정별로 상대국가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을 달리 합니다.

〈 FTA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비교표 〉

구 분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APTA 협정
C/O 발급주체	수출자	세관, 산업부 등 국가기관 등

- 기관발급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민간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FTA, APTA 특혜관세 체약 상대국은 세관, 산업부 등 모두 국가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주체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한·ASEAN FTA에서는 칠레, EFTA와의 협정과 달리,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 유효하며 한·ASEAN FTA의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 미얀마 : 상무부
3.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통상부 또는 산업부
4. 필리핀, 싱가포르: 세관
5.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단, 개성공단 생산물품 : 세관)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발급기관에서 심사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명서 발급 신청자가 정확하게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와 ASEAN 국가와의 HS분류체계가 6단위까지만 공통이고 그 이하는 서로 다릅니다.
- 또한, 2007년에 HS가 대폭 개정되었으나, ASEAN 일부 국가에서는 개정 HS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는 HS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 계약하는 하는 경우 미리 계약자와 상의하여 해당국의 HS를 파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원산지 결정기준은 2,4,6단위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이 문제가 되지는 않음



수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FTA 특례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당해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증빙서류, 기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입니다.
- 특히 물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 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 계약서 등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추이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발급기관 방문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세관·상공회의소 모두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수 없을까요?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서류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성실 업체 또는 세관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만으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업체는 FTA 특례고시 제4절 원산지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하여, 수출입 규모, 법령 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 공장등록제란, 해당 물품의 생산 여부, 제조공정 및 생산물품의 종류 등을 세관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공장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공장등록번호가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장등록제는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한·ASEAN FTA가 발효되기 전에 고시하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공장등록번호를 한·EFTA FTA 원산지 신고서의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umber)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장등록제를 하면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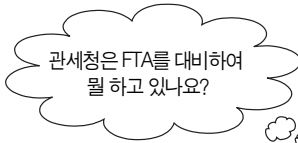
- 공장등록제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한 업체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장등록 유무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 제출 서류 등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 동 제도를 채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게 규제라고 인식될 우려가 있으나, 대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입장에서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ASEAN 국가의 검증요청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 공장등록제를 시행할 때 우선 공장 등록 신청에 의해 공장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내용도 물품의 실제 생산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에 한정토록 하여 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III. 한-ASEAN FTA 활용하세요!

관세청은 FTA를 대비하여 뭘 하고 있나요?



우리청은 '4C'로 대표되는 FTA관세행정전략을 수립하여 FTA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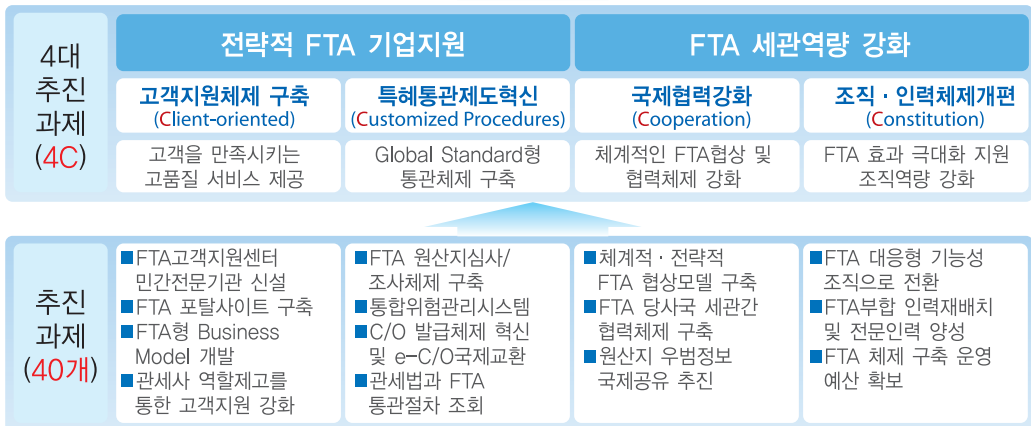
- 4C는 기본적으로 4가지 C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객지원체제 구축, 특혜통관제도 혁신,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의미합니다.
- 또한 4C는 미래의 성공적인 FTA 체제구축을 예견(Foresee)하는 전략이며, 고객(Customer)과 세관(Customs)을 위한 전략을(For C) 표현하고 있습니다.

FTA 미션

자유무역환경을 전략적으로 선도하는 관세행정

FTA 비전

Global Top 수준의 FTA 관세행정



FTA 추진위원회 구성·4대 추진전략별 40대 이행과제 선정·중점 추진



FTA 비즈니스 모델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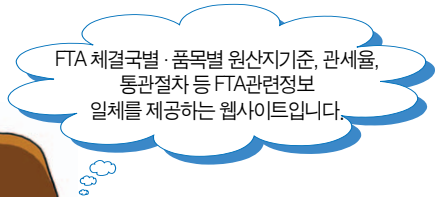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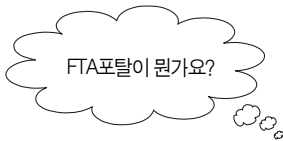
- FTA형 비즈니스 모델은 수출업체와 관련이 있는 FTA별 원산지기준·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가공 및 해외수출까지 FTA별 특혜요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혜택 및 이윤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환경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모델」입니다.

-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은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각 세관 FTA 전문 컨설팅 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FTA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관세청 FTA 포털 이용하세요!



- 현재 FTA포털에서는 FTA 법령, 관세율(수입), 품목별원산지기준, 통관절차, Q&A게시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원산지 상대국 관세율 제공, Master Chart(원산지 기준 및 사례 검색시스템) 구축, FTA형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화, 고객관리(CRM) 기능 및 정보교환 채널 구축, FTA 상대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FTA포털 화면 <http://fta.customs.go.kr> >





IV.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Good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 번호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한-ASEAN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FORM AK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Issued in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세관직원용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물품번호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상품명 및 포장수량 (HS부호 및 수량 포함)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총중량, 수량 및 가격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12.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AK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and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CTC" "WO-AK"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Name of manufacturer,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7. EXPORTER :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8.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9.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0.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2.
11.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작성요령

1. ASEAN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ASEAN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부합할 것.
 - 나.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준수할 것.
 - 다.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할 것.
3.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8란에 기재합니다.

생산 또는 제조 형태	기재요령(영문으로 기재)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 되는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RVC 45%” “CTH + RVC 40%” “Specific Process”
라. ASEAN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4. 모든 물품은 해당 물품별로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 제7란의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제7란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HS number)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를 말합니다.
7.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합니다.
8.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제4란의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9.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란의 “제3국 송장” 항목에 체크(✓)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0.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에는 제13란의 “전시” 항목에 체크(✓)합니다.
11. 연결 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인 경우에는 제13란의 “연결 원산지 증명서” 항목에 체크(✓)합니다.



IV. Q & A (질의응답)

Q1. ASEAN 모든 국가의 물품이 FTA의 적용을 받나요?

A : 태국은 한-ASEAN FTA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7년 6월1 일부로 FTA가 발효되더라도, 해당국가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동 국가와의 FTA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체결국 중 두 나라가 발효후에도 국내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두 나라에 대해서는 국내절차가 완료될때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A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Q3. 한-ASEAN FTA의 수리후 협정관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 기존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방식과 같이 수입신고시에 의사표시를 하시고 1년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칼라프린터가 필요한가요?

A : 꼭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ASEAN 국가는 수입통관시 관행적으로 인장(印章)의 색상을 문제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가급적 칼라프린터로 출력하는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Q5.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업체인데, 어느 FTA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A :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중 세율 및 원산지기준이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산지증명서는 선택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Q6.** 각 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면 다 되는 건가요?

A : 아닙니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하며, 발급기관도 국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원산지증명서로 특혜를 받으면, 나중에 추정될 수 있으므로,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국가별 발급기관〉

국 가	발급기관	국 가	발급기관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미얀마	상무부
캄보디아	상무부	필리핀	세관
인도네시아	통상부	싱가포르	세관
라오스	상무부	베트남	통상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우리나라	세관, 상공회의소

Q7. FTA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FTA메일(fta@customs.g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향후 FTA포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Q8. 수출국과 송장발행국이 틀린데 특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3국 송장발행 대상』임을 명시한 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 등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9. 『FTA원산지기준』과 『원산지 표시기준』은 같은 것인가요?

A : 다릅니다. 『FTA원산지요건』은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인데 반하여, 『원산지표시기준』은 물품에 물리적인 원산지표시를 정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기준과 특혜를 받기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Made In Korea’로 표시되어도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FTA원산지기준』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기준』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V. 알아두면 좋은 자료

FTA 문의처

- ❖ 협상 관련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 02) 2100-8110
- ❖ 법령 관련 :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 ☎ 02) 503-9239
- ❖ 통관 관련 : 관세청 공정무역과 ☎ 042) 481-7894, 7896
관세FTA고객지원센터 ☎ 1577-8577

FTA 관련기관 홈페이지

- ❖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
 - 협상 등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게재
 - ☞ 협상 등 추진현황(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 ☞ 협정문(조약정보) : http://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0/mk_c056/mk_d154/mk05_02_sub06_01.jsp
- ❖ FTA관세특례법령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재
 - 한·칠레 FTA관세특례법령, FTA관세특례법령 게재
 - ☞ 법령정보 : http://www.mofe.go.kr/law/law_00.php?tname=EC0102
- ❖ FTA 관세특례고시 및 주요 질의·답변
 - 관세청 FTA포탈 게재
 - FTA관세특례고시, 통관절차 등 web-book 및 주요 질의·답변
 - ☞ <http://fta.customs.go.kr>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한 · ASEAN FTA

FTA 100 % 활용 가이드

2007년 4월 25일 초판 인쇄
2007년 4월 27일 초판 발행

저 자: 관세청 공정무역과
최희인, 이철재, 박 현
김영경, 김관우

발행처: 케미칼기획인쇄 편집부

인쇄처: 케미칼기획인쇄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4가 276-3

T E L : 02)2279-9327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동(3~7층)